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 주 군 수

2. 제정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 (법률 15291호, 2017.12.26.공포, 2018.1.1시행)에 따라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「성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」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
나. 납세자보호관의 설치, 선발, 업무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-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둠
- 6급 또는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

다. 안건심의 및 위원회 운영(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)

라. 고충민원의 처리, 분류, 처리기간(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)

마.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(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)

바. 권리보호 요청 및 대상(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)

사. 납세자권리헌장(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)

아. 제도개선 과제 발굴(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)

자. 권리보호 업무 등(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세기본법』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 〔기획감사실-1544('18.2.21)〕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11174('18.2.21)〕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〔기간: '18.2.23~ '18.3.15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

○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, 선발, 업무, 권한 등 납세자 보호관의 운영과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,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, 권리보호 요청, 납세자 권리헌장, 제도개선 과제 발굴,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